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·출력되었습니다.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6-03-15

의 정 부 지 방 법 원

제 1 행 정 부

판 결

사 건	2015구합8669 취득세부과처분 취소
원 고	1. A
	2. B
피 고	[redacted]시장
변 론 종 결	2015. 12. 15.
판 결 선 고	2016. 1. 26.

주 문

1. 피고가 2015. 3. 23. 원고들에게 한 취득세 51,982,680원, 지방교육세 4,794,260원, 농어촌특별세 2,195,13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·출력되었습니다.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6-03-15

1. 처분의 경위

가. 원고들은 2012. 11. 7. C으로부터 [redacted]시 D 대 362㎡ 및 그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스라브지붕 3층 노유자시설(이하 '이 사건 각 부동산'이라 한다)을 매수하고(각 1/2 지분), 2013. 1. 2.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.

나. 피고는 원고들이 어린이집을 설치·운영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(2014. 12. 31.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, 이하 같다) 제19조 제1항에 따라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취득으로 인한 취득세, 농어촌특별세, 지방교육세 등(이하 '취득세 등'이라 한다)을 감면해 주었다.

다. 원고들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서 E어린이집을 운영하던 중 2014. 4. 13. 위 어린이집을 폐업하였다.

라. 피고는 원고들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 제2호에 따라 2015. 3. 23.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감면받았던 취득세 51,982,680원, 지방교육세 4,794,260원, 농어촌특별세 2,195,130원을 각 부과(이하 '이 사건 처분'이라 한다)하였다.

[인정근거] 갑 제1, 4호증, 을 제1 내지 3, 6호증(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)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원고들의 주장

어린이집을 설치·운영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자가 제3자에게 당해 부동산을 임대하여 제3자로 하여금 어린이집을 설치·운영하게 한 경우에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·출력되었습니다.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6-03-15

조 제2호에서 규정한 '직접 사용'의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는데, 원고들은 2013. 1. 2.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하고, 2015. 1. 16. 이 사건 각 부동산 소유권을 상실할 때까지 이 사건 각 부동산에서 직접 어린이집을 운영하거나 이 사건 각 부동산을 F에게 임대하여 F으로 하여금 어린이집을 운영하게 하였으므로, 원고들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어린이집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은 2년 이상으로 보아야 한다.

3. 관계법령

별지 '관계법령' 기재와 같다.

4. 판단

가. 갑 제1 내지 3, 5호증, 을 제6호증(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)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, 아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, 달리 반증이 없다.

① 원고들은 2013. 1. 2.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한 후 2014. 11. 17. F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도하였으며, 2015. 1. 16. F 명의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.

② 한편, 원고들은 2013. 1. 2.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한 후 이 사건 각 부동산에서 E어린이집을 운영하다가 2014. 1. 9. F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임대하였고, F은 위와 같이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임차한 후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2015. 1. 16.까지 이 사건 각 부동산에서 G어린이집을 운영하였다.

나. 어린이집을 설치·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취지는 영·유아 보육시설인 어린이집의 설치·운영에 혜택을 주어 보다 많은 어린이집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주기 위한 것이므로,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 제2호에서 규정한 '직접 사용'의 의미는 당해 재산의 용도가 직접 그 본래의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·출력되었습니다.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6-03-15

업무에 사용하는 것이면 충분하고, 그 사용의 방법이 원고들 스스로 그와 같은 용도에 제공하거나 혹은 제3자에게 임대 또는 위탁하여 그와 같은 용도에 제공하는지 여부는 가리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(노인복지시설인 건물을 제3자에게 임대하여 노인복지시설로 사용하게 한 것만으로는 해당 건물을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2011. 1. 27. 선고 2008두15039 판결 참조),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 원고들은 2013. 1. 2.부터 2015. 1. 16.까지 2년 이상의 기간 동안 원고들 스스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거나 F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임대하여 F으로 하여금 어린이집을 운영하도록 하였는바, 원고들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.

다. 따라서 위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.

5. 결론

그렇다면,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,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 판사 박남천

판사 김윤희

판사 김윤석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·출력되었습니다.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6-03-15

별지

<관계법령>

구 지방세특례제한법(2014. 12. 31.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

제19조(영유아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감면)

① 「영유아보육법」에 따른 영유아어린이집 및 「유아교육법」에 따른 유치원(이하 이 조에서 "유치원등"이라 한다)을 설치·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.

지방세특례제한법

제178조(감면된 취득세의 추징)

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.

2.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·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. 끝.